

특약변경대비표

1. 약관명 :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2. 변경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4. 주요 변경내용 : 약관에 구행명 삭제, 가입대상 자격요건 명확화, 타 수수료면제통장과 중복가입 불가

조항 삭제, 우대대상 연금종류에 퇴직연금 삭제, 면제대상 수수료 계좌 명확화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구 하나은행)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구행명 삭제
제 1 조 약관의 적용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u>「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입출금이</u> <u>자유로운 예금약관(구 하나은행)」</u>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약관의 적용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u>「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u> <u>예금약관」</u>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 약관을 적용합니다.	구행명 삭제
제 2 조 (생략)	제 2 조 (좌동)	
제 3 조 가입대상 및 제한 이 예금의 가입은 <u>실명의 개인에</u> 한하여 가능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u>타 수수료면제</u> <u>통장과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u>	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u>실명의 개인 또는</u> <u>개인사업자</u> 이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항명 변경 개인사업자 문구 추가 중복가입 불가 삭제
제 4 조 (생략)	제 4 조 (좌동)	
제 5 조 이자지급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또는 하나은행 역모기지 대출금 2. 하나은행에 가입된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3. (생략) ④ ~ ⑤ (생략)	제 5 조 이자지급 ① ~ ② (좌동) ③ (좌동)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또는 KEB하나은행 역모기지 대출금 2. KEB하나은행에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3. (좌동) ④ ~ ⑤ (좌동)	퇴직연금 삭제 구행명삭제

<p>제 6 조 우대 서비스</p> <p>① 이 예금 가입자가 아래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월에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이하 생략)</p> <p>1. ~ 2. (생략)</p> <p>②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은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p> <p>1. ~ 6. (생략)</p> <p>7. 납부자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p> <p>③ ~④ (생략)</p>	<p>제 6 조 우대 서비스</p> <p>① 이 예금 가입자가 아래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월에 <u>이 예금에서 발생하는</u> 아래와 같은 수수료에 대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좌동)</p> <p>1. ~ 2. (좌동)</p> <p>②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은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p> <p>1. ~ 6. (좌동)</p> <p>7. 납부자 자동이체(<u>타행 자동이체 포함</u>)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p> <p>③ ~ ④ (좌동)</p>	<p>수수료 면제 대상통장 명확화</p> <p>타행 자동이체 추가</p>
---	--	--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및 제한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 통장”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합니다.

제5조 이자지급

-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1. 보통예금 : 매년 6월,12월의 제3금요일
 2. 저축예금 : 매년 3월,6월,9월,12월의 제3금요일
-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③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이내 이 예금으로 아래 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일의 최종잔액 중 0 ~ 200만원 구간에 대해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때 ②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또는 KEB하나은행 역모기지 대출금
 2. KEB하나은행에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연금(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3. 기타 연금(기타 연금이란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입금된 자금으로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 으로 20만원 이상 대량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자금입니다.)
- ④ 이 예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고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이용대금을 매월 1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원가일에 (연 0.5%)의 우대금리를 ③항의 고시한 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
- ⑤ 이 예금으로 ③항의 연금을 수급하고, 이 예금에서 적립식 예금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시 또는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이용대금을 매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원가일에 (연 0.3%)의 우대 금리를 ③항의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합니다.

제6조 우대 서비스

- ① 이 예금 가입자가 아래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월에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에 대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신규 가입월 및 가입월 다음달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제②항 및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를 제공합니다.
1. 전월에 이 예금으로 제 4조 제③항의 연금이 입금된 경우 제②항 및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 제공
 2. 아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한 경우에는 제②항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을 제공하며, 2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②항 및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 제공
- 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시
- 나. 전월에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시
- 다. 전월에 이 예금의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시
- 라. 전월에 이 예금에서 각종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 마. 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 ②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은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1.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2.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3. 폰뱅킹(ARS)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4.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5.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6. 수표 발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7.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 ③ 수수료 우대서비스 II는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1. 창구에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2.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3.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 (타행은 CD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④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전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기존 가입계좌를 포함하여 2015년 8월 29일부터 적용되며, 제 4조 ③항 우대금리 한도는 기존 부자되는 연금통장 및 행복연금통장 계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부칙1>

본 약관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

본 특약은 기존 가입계좌를 포함하여 2016년 6월 7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부자되는 연금통장 및 행복연금통장 계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